

의안번호	제 42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3년 10월 4일

#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25
----------	-----

제출연월일 : 2023. 10. 4.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4년도 민간위탁 사업

(단위: 천원)

기관명	사무명	사업대상	위탁기간	사업비
충청북도 교육청	2024.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사업	충청북도 초·중·고·특수 학생	'24.1.~12.(12개월)	30,000

### 3. 참고사항

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별첨

나. 관계법령: 별첨

#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지원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체육건강안전과

## I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 2, 제15조의 2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7조(위탁)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체결」 (2023.5.31.)

## II 추진 배경

- 최근 10대 마약사범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증가되고 있어, 학교 내 마약 예방교육 철저 등 대응 강화 필요
  - ※ 전국 마약사범 중 청소년(10~20대) 비율 '17. 15.8% → '22년 34.2%(2.4배 증가)
- SNS·가상화폐,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거래하게 되면서 청소년이 마약에 중독되거나 유통에 가담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 충북의 경우 고등학생이 텔레그램 마약판매망을 운영하면서 환각버섯 재배('22.10.)
-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학교 교육 지원 확대 필요

## III 추진 목적

- 교육청-지역사회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마약예방교육 실효성 증대
- 학생 대상 마약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약 인식 제고

## IV 세부 추진계획

- 사업명: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사업
- 위탁기간: 2024. 1. 1. ~ 12. 31.
- 위탁내용: 학생 마약 예방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운영 및 수반되는 사무 위탁
- 위탁비용: 30,000천원
  - \* 산출내역: 100,000원×300회(학생 마약 예방교육 강사비)
- 위탁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4호 자목에 의한 수의 계약
- 수탁자격: 학생 마약 예방 교육에 전문의학적 지식과 교육 역량이 있는 단체
- 수탁기관: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청주시 대성로 77-7)
- 민간위탁 업무 범위
  - 학생 마약 예방 교육 강사 지원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전문 강사-학교 매칭 관리 및 운영
  - 학생 마약 예방 교육 강사 지원 사업의 행정·회계 업무
  - 학생 마약 예방 교육 강사 지원 사업의 운영관리
- 민간 위탁 추진 절차

사전조사	적정성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예산편성 요구	동의안 제출 및 의회심의	예산안 확정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현황분석 필요성, 기대효과 운영사례조사	[*조례 제4조, 제5조] 민간위탁 사무 선정(적정성 검토) <b>개별법령(조례)에 위탁근거 必</b>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민간위탁금 (320-02) 예산 편성	동의안심의의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조례 제6조, 제7조]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선정결과 공고
사업부서	사업부서(행정과 협조)	사업부서	도의회	도의회	사업부서
계약체결	민간위탁금 집행	종합성과평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사후관리	
[조례 제9조] 위·수탁 계약 체결 계약서 사본 제출 (행정과)	민간위탁금 교부 수탁기관 지도·점검	[조례 제16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 (처리효과, 운영성과 등)	[조례 제7조, 제9조, 제16조]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여부 (위탁기간 만료 60일전)	민간위탁 최종점검 (결과 내부결재) 처리상황의 감사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감사관, 교육지원청	

\* 조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V 기대효과

-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 증대를 통한 안전한 학교 실현
-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 및 다차원 지원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구현

# 관계 법령 발췌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9.] [충청북도조례 제4930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5. 19.]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부칙 <제4930호, 202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시행 2023. 4. 14.] [충청북도조례 제4910호, 2023. 4.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4.>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 ③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 4. 14.>

부칙 <제4910호,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9. 8.] [대통령령 제33316호, 2023. 3. 7., 일부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함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